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신청인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	
허가·신고·협의일		년 월 일				
처리 결과	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	면적(㎡)		금액(원)		
	사유					
	근거	「초지법」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				
	분할 납부 사항	납부기한	허가등 전	1회	2회	3회
년 월 일		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
	대체초지 조성비 분할 납부 액					
※ 「초지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보증서등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 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.						

끝.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	공개구분	